

-남포교회 청년2부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포교회 청년2부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포교회 내에 둔다.

제3조(회기) 본회는 회기가 시작되는 그 해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를 회기로 한다.

제4조(목적) 본회는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외형적인 성장이 아닌 회원들의 내면적 성숙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들은 서로의 실패를 위로하고, 성장에 같이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쓴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에 출석하는 만 25세 이상 30세 이하의 청년으로 본회에 등록 후 정해진 기간의 새 가족 교육을 마친 자 혹은 이전에 회원으로 인정받은 자로 한다.

제6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기타 본 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7조(권리) 본회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자격) 본회 임원의 자격은 회장의 경우 출석률 50프로 이상으로 하며 다른 임원의 경우는 본회 회원의 자격을 만족하면 된다.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회계: 1인
4. 부회계: 1인
5. 서기: 1인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통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각부 사업을 통괄한다.
3. 회계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4. 부회계는 회계업무 보조와 회계 부재 시 회계의 역할을 대행한다.
5. 서기는 본회의 기록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원이 궐위 되었을 시는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그 외의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선 거

제12조(선거) 본회의 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를 요한다. 2차 투표로 미결 시 3차 투표에서 다 득표자로 한다. 본회의 회계, 부회계 및 서기는 회장, 총무 당선인이 협의를 통해 후보를 정하며, 각 후보의 동의를 구한 후 선임한다.

제 5 장 조 직

제13조(부서) 본회의 부서와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찬양부 :본회의 교회음악 및 찬양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2. 새 가족부 :본회의 신입회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부서의 구성) 본회의 회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는 부장 1인을 둔다. 본회의 소속 회원이면 누구나 부서에 소속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부장은 부서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15조(조) 본회의 회원들은 모두 조에 소속되며, 각 조는 3개월마다 분기가 바뀌어 다시 새롭게 편성된다. 각 조별 활동은 성경공부와 회원 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조의 구성) 조의 구성과 관련한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조장 :임원회의를 통해 선출된 조장은 임원 및 조장 회의에 참석하며 성경공부 및 조모임을 인도한다.
2. 조원 :임원회의를 통해 조 편성이 되며 소속된 조의 성경공부 및 조모임에 참여한다.

제17조(소모임)

1. 회원들의 자발적인 취미활동 및 친교모임으로서, 본회에 가입한 회원들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소모임은 담당교역자와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모임은 담당교역자와 임원회의의 협의에 따라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제 6 장 회 의

제18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기년도의 4분기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인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부의 안건은 1주일 전에 알려야 한다.

제20조(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21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교회의 재정 보조, 회원의 회비 및 특별 찬조금으로 한다.

제22조(재정 지출 및 감사) 본 회의 재정 지출 및 감사는 교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 8 장 회칙 개정

제23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9. 8. 9)

제1조(미비조항)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를 따른다.

부 칙(2019. 8. 9)

본 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된다.